인사모 대응 방안 (4)

1. 검토 배경

▣ **국제인권법 소모임 "인사모" ⇨ 연세대와 공동학술행사 추진**

- (잠정적) 공동세미나 일자 : 2017. 3. 25. 토요일
- [세미나 주제] 대주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, '법관인사 이원화제도의 폐지', '고등부장 제도의 문제점', '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집중'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
- [발표] 연세대 이○○ 교수, 서울대 이○○ 교수, 김○○ 부장판사 등

▣ **국제인권법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개최 움직임**

- **2017. 1. 15. 일요일** 서울행정법원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개최하여 공동세미나 추진 승인할 예정

- 2017. 1. 12. 목요일부터 운영위원들에 대한 통지 절차 개시

▣ **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**

- 인사모는 최초 설립 당시부터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임이었으나, 법관 사회 반발을 우려하여 현재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임
- 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주제로 대학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부정적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임 ⇨ 적극적 대응책 마련 필요

2. 공동학술행사의 문제점

▣ **국제인권법 커뮤니티의 설립 목적과 활동 범위에 反함**

- "법관 인사제도 연구" ⇨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 제1조, 제8조에서 정한

"국제인권법 분야" 또는 **"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"**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함

- '사법권 독립 → 국민 인권 보장 → 국제인권법 범위 포섭' 논리는 비약
- 모든 커뮤니티에서 같은 방식의 논리 가능
  - (예) 법관 과중한 업무 → 법관의 건강권 위협 → 재판의 질 저하 우려 → 재판청구권의 충실한 보호 역행 → 의료법 커뮤니티 논의 가능

● **공동학술행사 ⇨ 커뮤니티 공식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**

◈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◈

제1조(목적)

이 예규는 **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**(이하 '연구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구회의 설립허가)

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**설립목적**과 **예산사정** 등을 참작하여 설립을 **허가**할 수 있다.

제8조(활동)

①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.

1. **해당 전문법률분야**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
2.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
3.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4.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심포지엄의 개최

제10조(기타)

각 연구회는 **이 예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**에서 총회를 통하여 해당 연구회의 운영 등에 관한 **회칙**을 제정할 수 있다.

◈국제인권법연구회 회칙◈

제1조(목적)

이 연구회는 **국제인권법 분야**의 연구와 논문발표, 세미나, 국제교류 등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, 그 연구 성과를 재판실무에 반영하여 국민과 인류에게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8조(활동)

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.

1. **국제인권법 분야**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
2.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
3.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4.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법률 심포지엄, 세미나 등의 개최
5. 국제인권법 분야에 관한 국제 교류

6.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

3. [총론] 대응의 기본 방향

▣ 1 **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됨**

● 문제 해결의 주체는 現 회장임 ⇨ 전임 회장이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

● 법원행정처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

- 회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후속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해서는 안 됨

▣ 2 **철저하게 '단체의 민주적, 절차적 정당성' 문제로 접근해야 함**

● 어떠한 경우에도 '법관 인사문제'라는 주제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됨 ⇨ 회장은 "판사들이 법관 인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"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를 전제로 핵심 세력과 대화를 해야 함

● 문제는 ① 커뮤니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, ② 커뮤니티 예산을 활용하여, ③ 외부와 연계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, ④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임

- 특히, 소모임 운영자들이 행사 목적 · 발표자 · 주제 · 일시 · 장소까지 다 정한 후 회장과 운영위원회를 '승인'의 절차적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음

- 현재 국제인권법 커뮤니티 핵심 세력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매우 비민주적이며 패권주의적인 처사임

  ▪ 특정 계파 중진 모임 결의사항을 정당 최고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승인받으려는 것

  ▪ 과거 학생/사회운동 및 진보정당에서 NL 계열이 보여주었던 비민주적이고 패권주의적인 모습과도 유사(예: 한총련, 통진당 등)

● 現 회장은 핵심 세력이 보여주는 비민주적인 모습에 이의를 제기하면서, 원칙으로 돌아가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

함으로써 ‘단체 의사결정의 민주적, 절차적 정당성’을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해야 함

4. [각론] 구체적인 대응 방안

▣ 2017. 1. 15. 운영위원회 속행 ⇨ 사임하겠다는 뜻 시사

- 1 회장은 사전에 전혀 공식 논의를 한 적이 없어 현 상태에서는 결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“① 커뮤니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, ② 커뮤니티 예산을 활용하여, ③ 외부와 연계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”고 설명

- 2 만일 운영위원들이 회장에게 강력하게 반발할 경우, 차분한 어조로 위와 같은 설명을 반복하면서, ④ 위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이례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단체 운영의 절차적·민주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 같다는 설명을 추가함

- 3 운영위원들이 계속 반발할 경우,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더 추가로 논의해 보자고 하면서 속행하자고 주장

- 4 운영위원들이 속행하자는 주장에도 반발할 경우, 회장은 “여러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제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만 회장직을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”고 설명 ⇨ 회장이 사임의 뜻을 시사하면 운영위원들이 더 이상 강경한 주장을 할 수는 없고, 속행에 동의할 것이며, 아마도 뒤풀이에서 이야기하자면서 뒤풀이 자리로 이어질 것임

▣ 2017. 2. 말 운영위원회 개최

- ‘소모임’ 주관 행사로 개최할 것을 주장

- ‘커뮤니티’ 주관 행사 고수 시 ‘임시총회 소집’도 검토 가능(단,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할 필요 있음)

▣ 커뮤니티 주관 행사 고수 시 주요 대책

- ① 커뮤니티 명칭 사용 및 회비 지출 승인 거부

● ② 신임 회장 학술대회 불참 → 신임 회장 사임

- 신임 회장 사임하면서 고법부장 이상 회원들도 함께 탈회하는 것이 적절

● ③ 예산 지원 감축(최소화) ⇨ **법원행정처의 결산 심사 및 관리 강독 강화**

- 예산 지원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

◈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◈

제8조(활동)

② 연구회 간사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1년 동안의 활동성과, 회원현황, 결산현황, 및 당해 연도의 활동계획, 소요예산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▣ [참고] 설립 목적 위반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 방안 검토

● 관련 규정 ⇨ ① 연구회는 폐쇄 규정 없고, 설립허가 취소 가능, ②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정국장 또는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폐쇄 가능

◈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◈

제2조(연구회의 설립허가)

③ 제2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설립목적과 예산**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.** ⇨ 반대해석상 설립허가 취소 가능

◈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◈

제10조(커뮤니티의 폐쇄)

④전산정보관리국장은 개설된 커뮤니티가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거나 회원들의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당해 커뮤니티 회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위원회의 권한)

① 운영위원회는 게시물의 이전 또는 삭제, 커뮤니티의 폐쇄, 커뮤니티 운영자 변경, 코트넷 이용권한 제한을 비롯한 코트넷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심의・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이 지침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커뮤니티 폐쇄, 운영자 변경 또는 커뮤니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☑ 연구회 설립허가 취소되더라도 바로 해당 커뮤니티가 폐쇄된다고 보기 어려움

● **시행 타당성 검토 ⇨ 명분 약하고,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소극**

- **①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 시 ⇨** 법관 사회의 강력한 반발 예상 + 취소권자인 행정처장님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부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할 필요

- ② 목적 또는 운영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⇨ **코트넷 운영위원**

회에서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등 조치 가능하나,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할 필요 (**행정처의 불통·권위적·관료적 이미지 악화,** 이를 경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신중 검토 필요) <끝>